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9. 10 선고 2024가단237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

담당변호사 김지혜

변 론 종 결 2024. 8. 27.

판 결 선 고 2024. 9. 1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3. 12. 5. 접수 제721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1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8. 4.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74,800,000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B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.

나. 피고는 2023. 12. 5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3. 10. 30.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’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24. 4. 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B 주식회사 및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경매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판단

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영채

별지

1)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.